하동군의회 공고 제2026 - 47호

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11. 9.

하동군의회의장 강 희 순

1. 조례명: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동군 자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범사업의 시행 범위 확대(안 제7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6년 11월 16일(월)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
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1) 팩스: 055-880-2939

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http://www.hdcl.go.kr) 참여마당(의회에 바란다)

3) e-mail: jina927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**조 례 명: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　　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　　견	비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조례 제 호

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위하여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”을 “위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시범사업의 시행)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,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7조(시범사업의 시행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위하여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